

의안번호	제 181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4월 30일 (제372회)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4월 17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17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2022년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비(여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조정(별표 2)
 - 철도운임 : 1등급 → 실비(특실)
 - 숙박비(1일당)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실비(상한액 폐지)
 - 비고 1 : 삭제(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 관련)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
-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2019~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 알림 공문

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 임</th> <th>일 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 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1등 급</td> <td>실비 (1등 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20,000</td> <td>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td> <td>25,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2. <삭제 2017. 5. 18></p>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 급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 임</th> <th>일 비 (1일당)</th> <th>숙박비 (1일당)</th> <th>식 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실비 (특실)</td> <td>실비 (1등 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20,000</td> <td>실비</td> <td>25,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삭제> 2. <삭제 2017. 5. 18></p>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1등 급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실비 (특실)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 9.>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解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11. 19.>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1., 2014. 11. 19.>
- [전문개정 2010. 11. 10.]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0.]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 ⑥ 삭제 <2012. 1. 6.>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 특별시 70,000, 광역 시 60,000, 그 밖의 지역 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함께하는 도민, 일동경제 총복”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019~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2022년 의정비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의정활동비:** 2019~2022 / 매년 18,000천원을 지급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4에 따른다.
- **여비:** 2019~2022 /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별표 5에 따른다.
- **월정수당**
 - 2019년도: 연 36,936천원
 - ※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36,000천원)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2.6%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 2020년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2021년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2022년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을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끝.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의장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위원장

형조자

시행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1 (2018.12.17.) 접수
우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전화 043) 220-2142 / 전송 043) 220-2119 / cando03@korea.kr

청책기획관-1329(2018.12.17.)
<http://www.cb21.net>
/ 대국민공개